



**대구대학교**  
DAEGU UNIVERSITY

# **2019학년도 3학년 실습 OT**

# 목차

---

## I. 감염관리

1.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
2. 감염관리지침
3. 사고발생시 대처방법

## II. 환자 정보 보호

## III. 성희롱 예방 및 대처

## IV. 기타 유의사항

---





# I. 감염관리





# 1.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



# 실습전 감염관련 서류 제출

---

- ① 실습전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고,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.
- ② 결핵과 B형 간염에 대해서는 임상실습 개시 전에 증명서를 학과에 제출해야 하며, 시기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학교가 통보하는 시점에 따른다.
- ③ 예방접종과 검진에 해당하는 비용은 학생이 부담한다.
- ④ 학생 본인이 검진 및 예방 접종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추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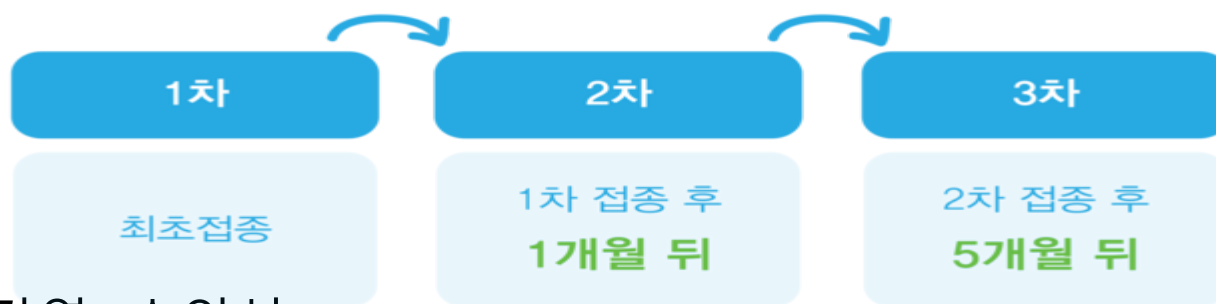
# 예방접종

| 검사항목           |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검사결과에 대한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B형간염 항체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침습적시술이나치치 참여교육생</li> <li>예) 의전원생, 간호학과생 등</li> <li>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등을 취급 업무에 참여 교육생.</li> <li>예) 임상병리학과생 등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양성자: 수탁교육제한 없음</li> <li>음성자: 수탁교육제한 없으나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예방접종 권유. 혈액, 체액 노출사고 시 즉시 조치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|
| 수두 항체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환자를 직접 대하는 업무 참여 교육생</li> <li>예) 의전원생, 간호학과생 물리치료학과생 등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양성자: 수탁교육제한 없음</li> <li>음성자: 대상포진환자 접촉 제한, 수두 유행기간 소아과 수탁 교육제한.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예방접종 권유. 수두 노출사고 시 격리 조치</li> </ul> |
| 홍역 항체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소아환자를 직접 대하는 업무 참여 교육생</li> <li>예) 의전원생, 간호학과생 등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양성자: 수탁교육제한 없음</li> <li>음성자: 홍역 유행기간 소아과 수탁교육제한.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예방접종 권유. 홍역 노출사고 시 격리 조치</li> </ul>                |
| 홍부 방사선<br>(결핵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탁교육부서 관계없이 병원내 수탁교육시간이 총 40시간 이상인 경우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상: 수탁교육제한 없음. 결핵 예방 지침 준수</li> <li>결핵(의심): 호흡기 내과 진료 시행. 결핵 치료 시 최소 2주간 수탁교육제한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|

# 예방 접종 및 면역 체계

## ▶ B형 간염 : 혈행성

B형간염예방접종은  
**총 3회 접종!**



## ▶ A형 간염 : 수인성

### ▶ 1회 추가 접종

# 예방 접종 및 면역 체계

---

- ▶ 성인용 Td : 10년 마다 1회 추가접종
- ▶ MMR : 1회 접종(가임 여성 : 풍진 항체 검사 권고)
- ▶ 수두(Var) : 항체 검사 후 2회 접종
- ▶ 인플루엔자 : 1회/년
- ▶ 결핵 : BCG 접종, Chest X-Ray





# 질병관리본부

예방접종  
관리

본인

예방접종  
증명서

질병관리본부  
KCDC

예방접종도우미  
예방접종정보 검색사이트

로그인 | 회원가입 | FAQ | Q&A | 사이트맵

예방접종 길잡이 | 예방접종관리 | 안전한 예방접종 | 예방접종 지식창고 | 예방접종 일일터

예방접종관리

본인

아이 예방접종 일정보기

- 본인 예방접종 관리
- 본인 예방접종 내역조회
- 본인 예방접종 일정보기
- 예방접종 증명서
- 지정의료기관 찾기
-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 
예방접종주신기에  
보건소
- 관련자료 다운로드

HOME > 우리아이 예방접종관리 > 아이예방접종관리 > 예방접종 일정보기

▲ 예방접종 일정보기

예방접종 일정보기 | 출생일검색 예방접종일정보기

IMUNIZATION

- ▶ 아이나 보호자의 출생일을 선택한 후 **검색버튼**을 클릭하면 우리아이의 표준예방접종일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- ▶ 아이나 보호자의 표준예방접종정보를 확인하려면 **로그인**을 하시기 바랍니다.

출생일 2017년 04월 25일 검색

민원 24  
24시간  
민원www.go.kr

예방접종증명서  
인터넷 발급

바로그기

- 예방접종  
일정정보기
- 이상반응  
신고하기
- 국가예방접종  
지원사업
- 어린이  
국가예방접종  
지정의료기관
- 국내예방접종  
백신현황
- 화이자  
예방접종  
확인사업
- 정기예방접종  
사전알림안내
- 해외여행



## 2. 감염관리지침



# 혈액매개 질환 노출

---

## 1. 노출 경로

### 1) 경피적(Percutaneous injury) :

- 주사바늘 찔림사고
-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손상

### 2) 비경피적 :

-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직원의 눈, 코, 구강 점막에 튀는 경우
  - 손상된 피부에 접촉
-

# 혈액매개 질환 노출

---

## 2. 노출 원인

- 1) 사용하고 난 뒤 주사바늘을 버리다가
- 2) 주사를 삽입하거나 혈액채취 도중
- 3) 주사바늘 사용 후 뚜껑을 다시 씌우다가
- 4) 주사바늘이 들어있는 린넨이나 쓰레기를 치우다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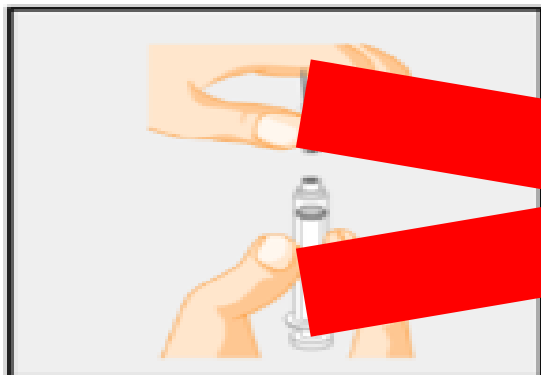
# 혈액매개 질환 노출시 처리절차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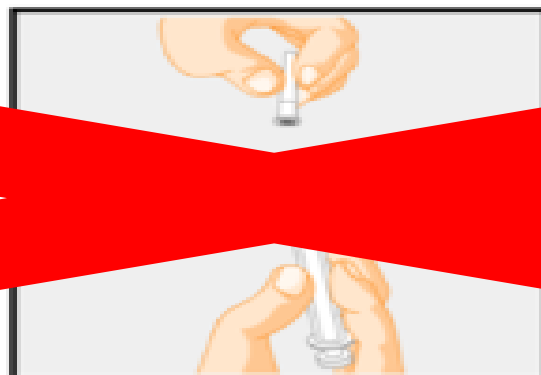
- 1) 찔림사고 후 즉시 감염관리실에 보고해야 함
  - 2) 위험요인에 따른 검사 예방약제 투여 신속한 조치 필요
  - 3) 주사바늘 찔림사고 발생 직후 조치
    - 환자 혈액이 묻은 주사바늘에 찔린 경우 : 찔린 부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기
    - 눈이나 입 점막에 피가 튀었을 경우 : 물로 씻어내기
    - 상처부위 소독, 피를 짜내는 것이 혈액매개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을 감소시킨다는 근거는 없지만, 소독제 사용이 금기사항은 아님
    - 상처부위에 락스와 같은 부식성 소독제를 사용하거나 소독제를 주입하는 것은 권고되지 않음
- 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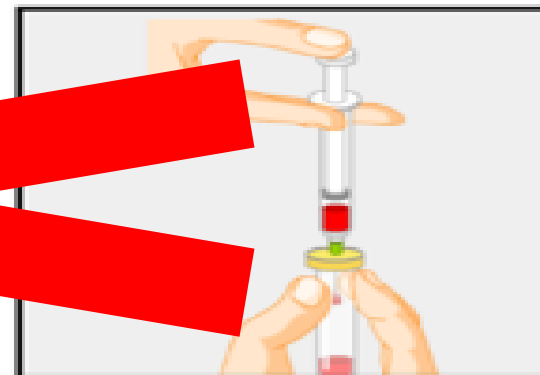
# 주사바늘 찔림사고 예방 지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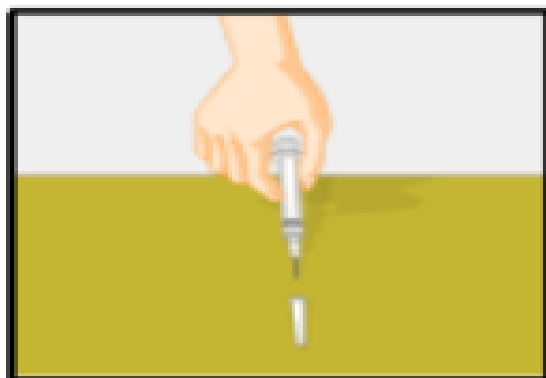
주사바늘 분리하지 않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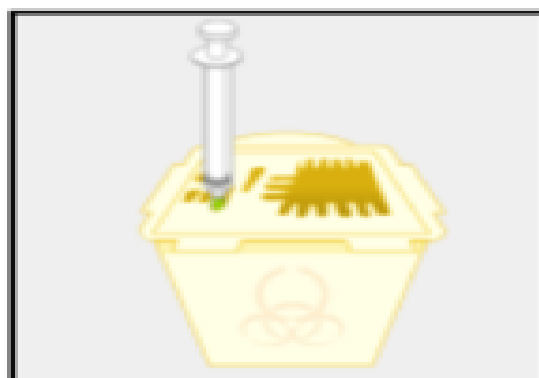
주사바늘 뚜껑  
recapping 하지 않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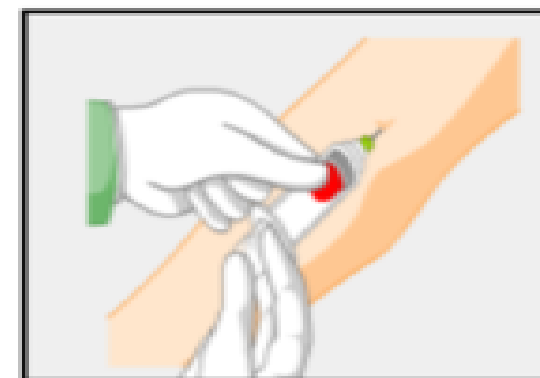
채혈 시 주사기보다  
vacutainer 사용



One hand technique  
사용하여 뚜껑 씌우기



손상성 폐기물 박스  
이용하여 버리기



Vacutainer 이용하여  
채혈하기

# 안전관리-좌상

---

- 찢림사고로 인한 감염 확률

## 감염원

## 감염발생

HBV

HBeAg +

HBeAg -

22.0-30.0%

1.0-6.0%

HCV

1.8%

HIV

0.3%

# 안전관리-좌상예방(사전관리)

---

- 시술에 필요한 물품은 팔이 닿는 곳에 준비한다.
- 조명과 공간이 시술에 적합한지 확인한다.
- 여러 가지 날카로운 기구를 사용하는 시술에서는 tray위의 공간을 분리하고, 기구의 날카로운 방향은 조작자의 반대방향으로 향하게 한다.
- 폐기물박스는 사용 후 기구를 바로 버릴 수 있는 위치에 둔다.
- 재사용 기구는 사용 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곳을 미리 정해둔다.
- 협조가 어려운 환자는 미리 파악하고, 필요 시 동료나 보호자의 도움을 요청한다.
- 환자가 갑자기 움직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에게 미리 설명한다.





# 안전관리-좌상예방(수행중)

- 시술공간과 날카로운 기구의 위치에 대하여 주의를 유지한다.
- 기구 조직 시는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주고,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.
- 날카로운 기구는 직접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고, 트레이 등 'neutral zone'을 이용하며, 구두로 알린다.
- 재사용을 하기위해 recapping 해야 하는 경우는 One-hand technique 사용한다.
- 정리 시 트레이나 침상 등을 잘 살펴 날카로운 기구를 확인한다.
- 재사용 기구는 떨어뜨리거나 옆지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뚜껑있는 용기에 담도록 한다.
- 손상성폐기물 박스가 가득 차 있는지, 충분한 크기인지 확인한다.
- 손상성폐기물 박스에 손을 대거나 넣거나 하지 않는다.
- 폐기 시 손은 항상 기구의 날카로운 부분 뒤에 위치하도록 한다.
- 나비바늘과 같이 튜브가 연결된 기구는 튜브가 꼬이면서 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.

# 안전관리-좌상예방(사후관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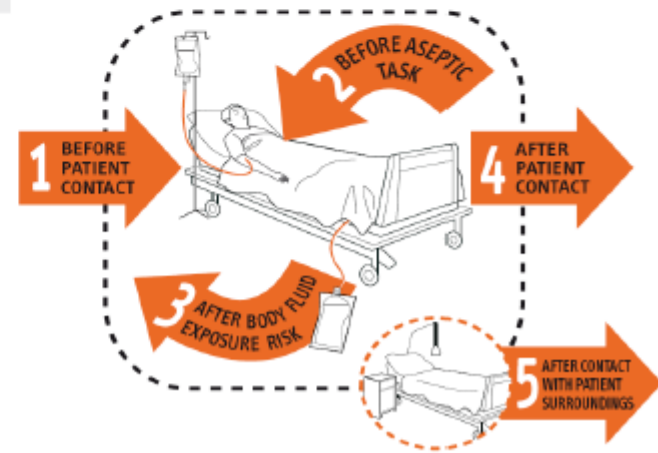
---

- 손상성 폐기물 박스 폐기 시 넘치는 지 확인하고 넘칠 경우 집게등을 이용하여 새박스에 옮긴 후 닫아서 폐기한다.
- 손상성폐기물 박스 밖으로 뚫고 나온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.
- 일반 쓰레기통이나 간호사실, 병실 바닥 등에서 날카로운 물건 발견 하는 즉시 처리하되 가능한 손을 이용하지 않고, 손을 사용할 경우 날카로운 부분 뒤를 잡도록 한다.

# 감염관리-손위생 필요한 상황

- 환자 접촉 전
  - 면역저하자 접촉 전
  - 카테터, 튜브류가 삽입된 환자 접촉 전
- 청결/ 무균 처치 전
  - 청결술 전: 음식 조리, 식사, 경구투약, 구강간호, 회음부 간호 등
  - 멸균술 전: 주사(정맥, 근육, 피하 등), 드레싱, 카테터 삽입, 천자, 검체 채취 등
- 혈액, 체액, 분비물 등 노출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고 난 후
  - 검체 채취 후
  - 배설물이나 토물을 다룬 후
  - 호흡기 분비물 접촉 후
  - 배액관련 행위 후
  - 폐기물 처리 후
  - 오염물품 다룬 후 등

- 환자 접촉 후
  - 격리환자 및 접촉주의, 비말주의 환자 접촉 후
  - 카테터, 튜브류가 삽입된 환자 접촉 후
- 환자 주변물품 접촉 후
  - 접촉주의 격리환자 침상 및 침상에 접하여 있는 물품 접촉 후
  - 환자의 체액이나 혈액, 분비물, 배설물이 오염된 환자주변 물품을 접촉하게 되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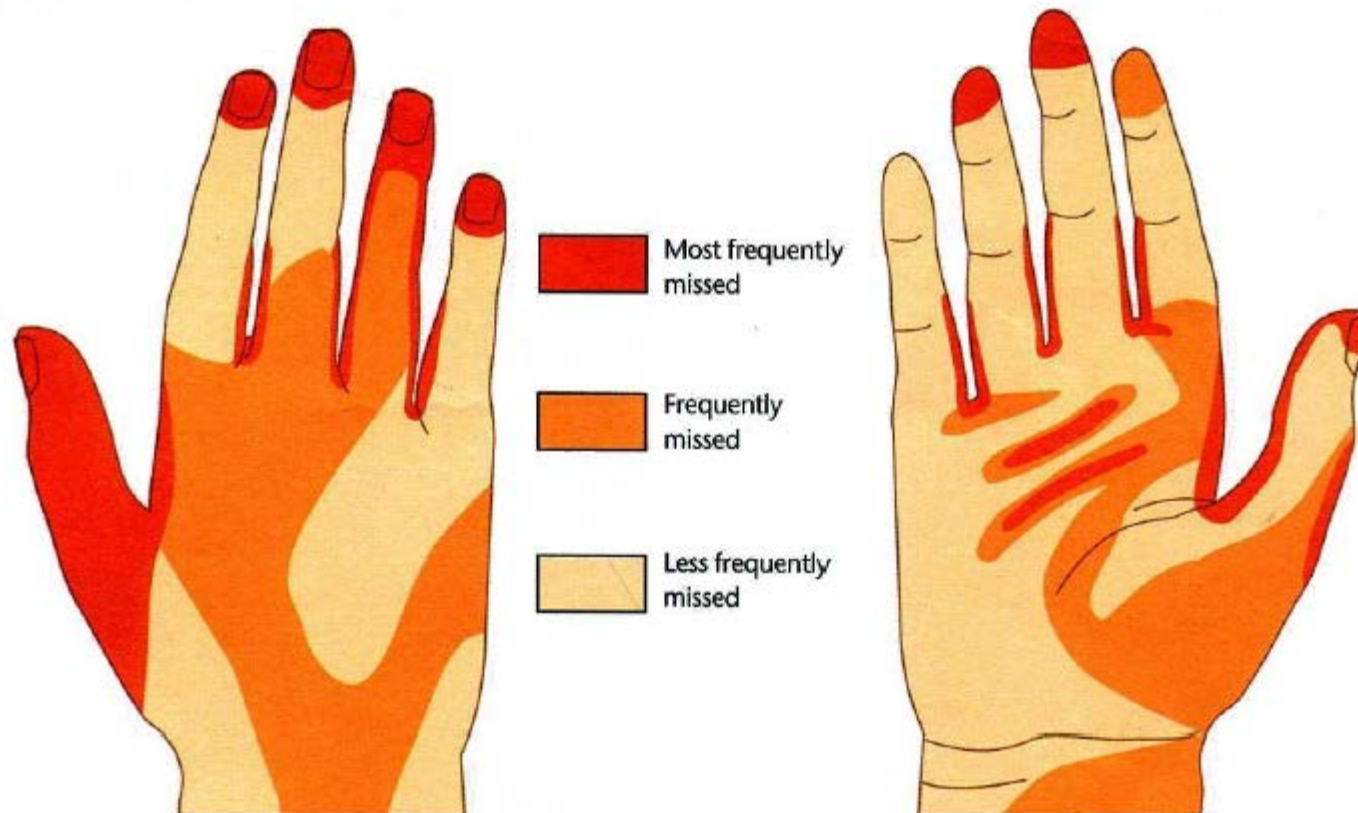


# 손위생 방법

---

- 일상적인 손위생은 핸드럽을 이용하며,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물과 비누를 이용 하여 손씻기를 수행한다.
  - 눈에 보이는 오염물이 묻은 경우
  - 아포형성 미생물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(예; Clostridium difficile)
  - 옴 환자 접촉 후
  - 화장실 다녀온 후
  - 설사환자 접촉 후
- 핸드럽
  - 한 손 바닥에 적정량을 바른 후 양손을 잘 비벼서 손과 손가락 전체 표면에 잘 문지른 후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.
- 손씻기
  - 물로 손을 적신 후 적정량의 제제를 사용하여 손과 손가락을 최소한 15초 이상 잘 문지른 후 물로 헹구고 일회용 타올로 건조시킨다.

## 손씻기 중에 놓치기 쉬운 부위



# 기침예절

---

- 감기나 백일해 등의 흔한 감염질환 뿐만 아니라 메르스, 사스, 신종인플루엔자 등 고위험 호흡기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임
- 기침, 코막힘, 콧물, 재채기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의료진, 수탁교육생, 환자와 내원객 모두에게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첫 시점에 적용되어 마지막 순간까지 잘 준수되어야 함
  -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도록 한다(마스크를 착용하거나 휴지나 옷소매 이용하여 가림).
  - 사용한 휴지는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 폐기한다.
  - 호흡기 분비물과 접촉하거나 튕 경우 손위생을 수행한다.

# 기침예절



대구대학교  
DAEGU UNIVERSITY

## Cover your Cough



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 
티슈로 **입**과 **코**를 가리고  
합니다.

티슈가 없으세요?  
그러면,  
소매로 가리고 합니다.



가급적  
**마스크**를 착용해주세요.

## Clean your Hands

흐르는  
따뜻한 **■**과 **비누**로  
20초간 손을 씻으시거나



알코올이 함유된  
**손 소독제**를  
이용하여  
손을 문지릅니다.

올바른 기침예절,  
나, 가족, 그리고 이웃을 각종 병원으로부터 지켜내는  
기분좋은 습관입니다.



# 보호장구 착용

---

- 감염성 물질로부터 피부, 눈, 점막, 호흡기, 의복을 보호하기 위함
- 예견되는 감염성 물질 노출 상황의 정도에 따라 한 가지만 또는 여러 가지를 같이 선택하여 착용
- 점막과 손상된 피부의 경우 감염성 물질의 침입에 매우 취약하므로 적절한 보호 장구의 착용은 매우 중요함



# 전파경로별 격리

| 격리 유형                   | 비말주의       | 접촉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기주의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격리병실                    | 권장         | 전파정도에 따라 개별병실 이용                   | 필요<br>음압설비, 재순환시 HEPA필터 적용 |
| 병실문 닫기                  | 불필요        | 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요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마스크/눈 보호구               | 1m 이내 접근 시 | 불필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효율마스크(결핵 시)               |
| 장갑/가운                   | 오염이 클 경우   | 균종류, 오염정도에 따라 필요                   | 불필요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의료진 코호트                 | 불필요        | 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불필요                        |
| 물품 개별사용<br>(혈압계, 체온계 등) | 권장         | 필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두, 홍역 필요                  |
| 이동 시 주의사항: 환자           | 마스크 착용     | 필요 시 덧가운 착용<br>손위생 시행<br>필요 시 장갑착용 | 마스크 착용                     |
| 퇴원 후 침상 커튼세탁            | 권장         | 필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불필요                        |



## 3. 사고발생시 대처방법



# 임상실습 중 사고발생시 대처요령

**제14조 (사고발생)** 임상실습도중 사고발생 시 즉시 임상실습지도교수와 실습지도자(수간호사)에게 보고하고, 학과장에게 사고보고서를 제출한다.

## **제16조 (안전관리자)**

- ① 학교는 행정팀 직원 1인을 학생의 학교안전관리자로 둔다.
- ② 학교안전관리자는 학생의 비상연락처를 사전 확보해야 하며, 임상실습 전 학생의 임상실습보험 여부를 확인하고 임상실습 시작 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③ 학교는 해당 실습기관의 임상실습담당자를 안전관리자로 위촉한다.

# 사고발생시 대처 흐름

## 제 19조 (보고 및 관리 대책)

- ① 학교안전관리자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를 인지하는 즉시 해당과목 실습책임지도교수를 거쳐 학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임상실습학생은 실습 중 상해나 감염, 기타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 임상실습현장지도자를 거쳐 기관의 임상실습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. 임상실습 안전관리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학교의 임상실습 실습책임지도교수에게 즉시 연락해야 한다.
- ③ 학교안전관리자는 학생이 임상실습을 나가는 실습기관의 임상실습 안전관리자의 비상연락처를 상호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.
- ④ 학생이 임상실습과 관련되어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할 경우 임상실습보험이 정하는 약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.
- ⑤ 학과는 의료법 제8조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정신질환자로 의심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교수회의를 통해 임상실습을 제한할 수 있다.

# 임상실습 전 보험가입 의무

---

- ① 학생은 임상실습 시작 전 반드시 임상현장실습보험에 가입해야 하며, 소요되는 비용은 학교가 지원한다.
- ② 학교는 임상실습 보험가입 여부를 해당 실습기관에 통보한다.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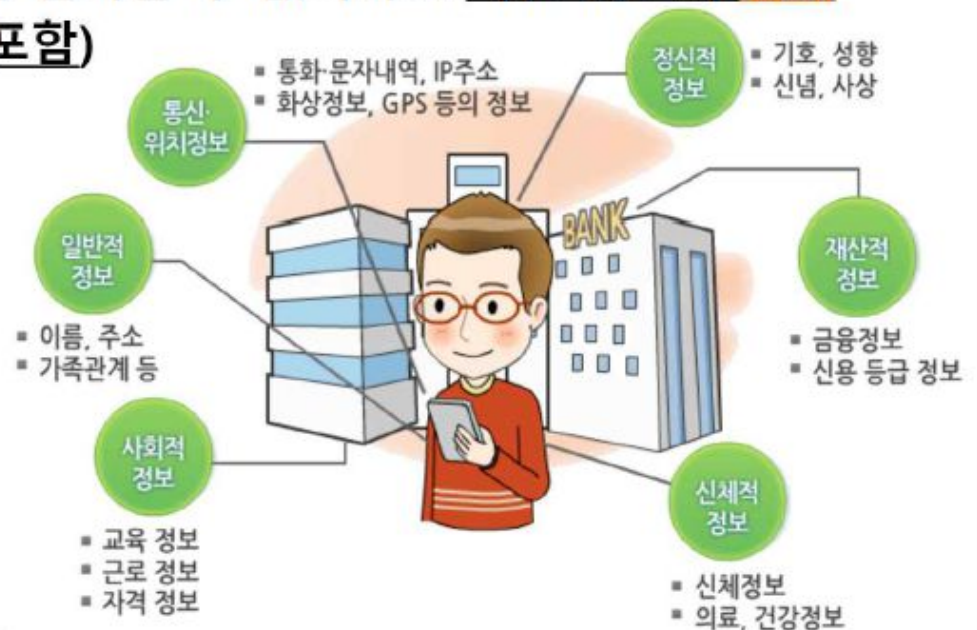
## II. 환자 정보 보호

# 개인정보란?



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
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)



#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유 규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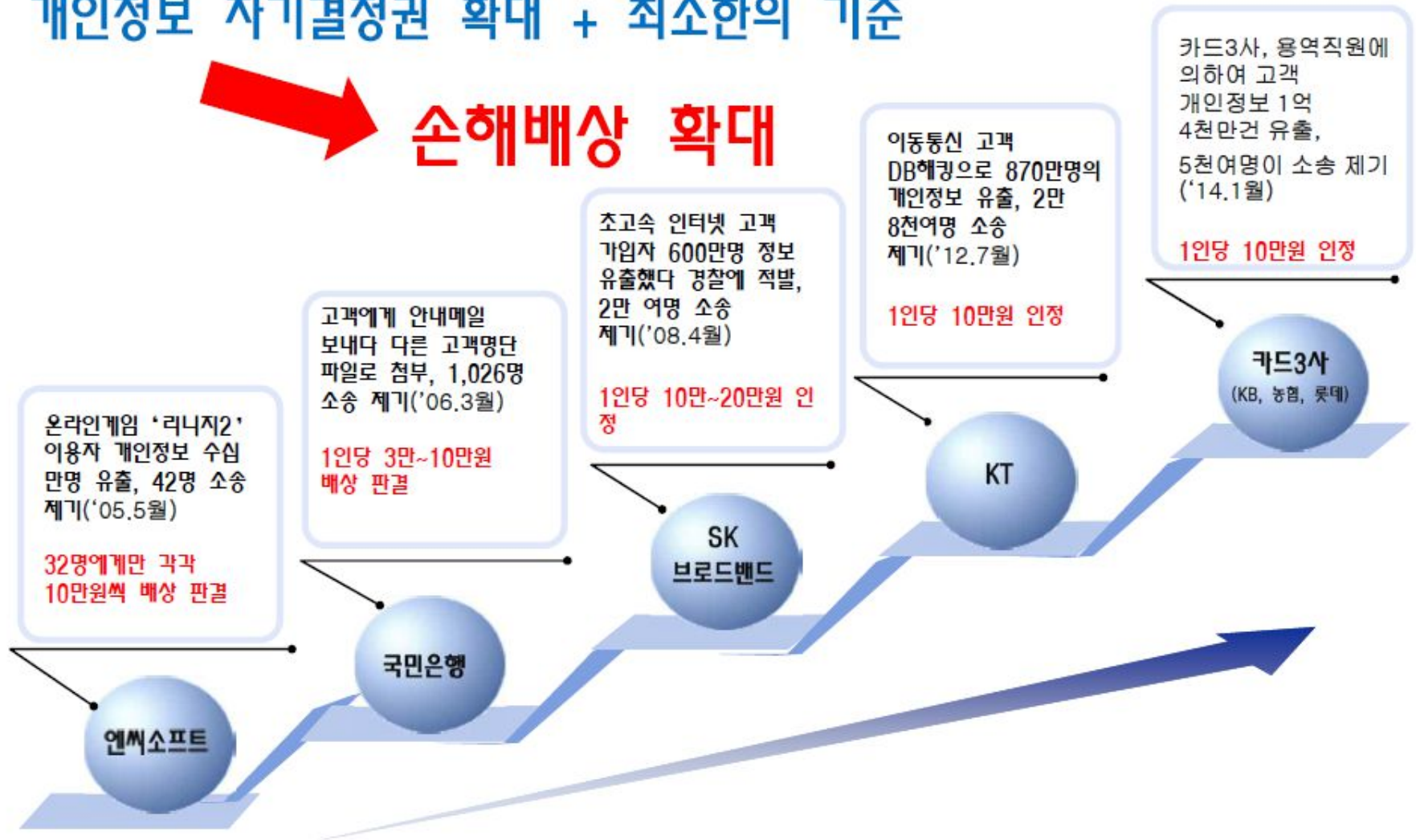
| 구 분    |       |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일반 정보  | 일반정보  |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생년월일, 출생지, 이메일주소, ID/PW, 가족관계 및 가족 구성원의 정보, IP주소 등 |
| 신체적 정보 | 신체정보  | 얼굴,지문,홍채,음성,유전자정보,키,몸무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의료/건강 | 건강상태, 진료기록, 신체장애, 장애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정신적 정보 | 기호/성향 | 도서, 비디오 대여기록, 잡지구독정보,여행 등 활동내역, 식료품 등 물품구매내역, 인터넷 웹사이트 검색내역              |
|        | 신념/사상 | 종교 및 활동내역, 정당, 노조 가입여부 및 활동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재산적 정보 | 개인/금융 | 소득정보,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, 통장계좌번호 및 비밀번호, 동산.부동산 내역, 저축내용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신용정보  | 개인신용평가정보, 대출 또는 담보설정내역, 신용카드 사용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회적 정보 | 교육정보  | 학력,성적,출석상황,자격증보유내역,상벌기록,생활기록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법적정보  | 전과, 범죄기록, 재판기록, 과태료 납부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근로정보  | 직장,고용주,근무처, 근로경력, 상벌기록, 직무평가기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타     | 통신정보  | 통화내역, 인터넷 웹사이트 접속내역, 이메일이나 전화메시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위치정보  | IP주소, GPS 등에 의한 개인위치 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병역정보  | 병역여부, 군번, 계급, 근무부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화상정보  | CCTV를 통해 수집된 화상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

##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확대 + 최소한의 기준



## 손해배상 확대



## 주요위반사례 [안전조치의무]

### ● 제29조 (안전조치 의무) –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

| 법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위반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제10조(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)<br/>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</li> <li>2.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</li> <li>3.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</li> </ol> <p>제2조(정의)<br/>20. "관리용 단말기"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, 운영, 개발,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말한다.</p> <p>(자료설명 : 관리용 단말기에 화면 보호기 설정이 미흡하여, 비 인가자 접근이 가능함)</p> |  |

## 주요위반사례 [파기]

### ● 제21조 (개인정보 파기)

#### 법령

제21조(개인정보의 파기)

-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·관리하여야 한다.

(자료설명 : 개인정보 분리보관 미 실시)

#### 위반사례





## 해결방안-병원실습 중(간호학과)

- ▶ 실습 중 알게 된 환자의 정보에 대해서 비밀 의무의 원칙을 준수한다.
- ▶ 환자의 실명은 개인 일지에 수기로 옮겨 적지 않도록 한다.
- ▶ 엘리베이터 안에서 환자나 병동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정숙 한다.
- ▶ 환자의 입원여부를 묻는 전화에 학생이 답하지 않고 담당 간호사를 바꿔준다.

# 환자 정보 보호

---

- ▶ 환자 정보 수집 시 실습 지도자의 허락 하에 관람
- ▶ 환자 정보에 대한 스크린 캡처 및 복사 행위 금지
- ▶ 실습 시간 외 환자 정보에 대한 유출 절대 금지

---

# III. 성희롱 예방 및 대처

---



# 성희롱이란?

---

- ▶ 성희롱이란 직장, 공공단체, 학교 등의 단체생활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권이나 교육권의 성차별을 유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.
- ▶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서, 여기에 해당하는 말과 행동의 범위는 성적대상화를 포함하는 음담패설,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성관계 요구에서부터 추행 및 성폭력범죄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고 다양합니다.

#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

---

- ▶ 성희롱은 개개인의 인권침해와 고용차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
  - ▶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고 직장환경을 악화
  - ▶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심각한 산업적 문제
  - ▶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고 차별 없는 건강한 일터와 사회 건설
-



# 대처방법

- ▶ 성적인 농담이 불쾌하다면 그 자리를 떠나거나 싫다고 분명히 말하라.
- ▶ 상대방이 무안해질 것 같아서, 또는 관계가 꺾으려워질 것을 염려하여 성희롱을 묵인하는 것은 관용이나 배려가 될 수 없다.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문제의 행동을 중지하라고 말하는 것이다.
- ▶ 불쾌한 성적 언행에 대한 나의 불분명한 대응이 상대방의 오해를 가중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고, 불쾌한 감정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표현한다.
- ▶ 음담패설이 싫다면 절대 웃거나 동참하지 말자.
- ▶ social code에 맞는 옷을 입는다.
- ▶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너무 사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.
- ▶ 직장에서 애교를 무기로 삼지 않는다.
- ▶ 현장지도자와 실습지도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.